

록 신청 서류 중 시설 및 장비 소유권 관계 증빙 서류를 추가하고, 선박금융업의 장비의 추가 도입이나 사업구역의 일시적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유권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안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요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소유나 임차가 가능하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제출 서류에는 소유권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록할 장비 및 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선박금융업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절차 마련(안제26조)

선박금융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등록된 항만 외에서 일정기간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및 신고확인증 서식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goldman1@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7-7호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SKC(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화승인더스트리, (주)효성

나. 신청일자 : 2017년 2월 22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품명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 조사범위 : PET 필름 중 ①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②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의 합이 0.25 μ m 이하인 것. 다만,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 관세품목분류 : HSK 3920.62.0000, 3920.69.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조사대상공급자

- (대만) Shinkong Synthetic Fibres Corp.

- (태국) A.J. Plast Public Co., Ltd., Polyplex Thailand Public Co., Ltd.

- (아랍에미리트연합) Flex Middle East FZE, JBF RAK LLC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당해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5년 4월 1일 ~ '16년 3월 31일(1년)

○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3년 1월 1일 ~ '16년 12월 31일(4년)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간을 부여함

(2) 현지조사

-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 (4) 이해관계인 회의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설정 및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는 신청인, 조사에 참여한 피신청인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통상자원부	
- 전 화	044-203-5863	044-203-5877
- FAX	044-203-4815	044-203-4814

*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6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하	단	기	재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7. 05. 04.)를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업 (제2552호)	(주)트루라이트프로젝트	홍성*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3, 1312호(신설동, 동대문베르빌)
수입업 (제2751호)	유조이덴탈	전준*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7길 25